

# 한국의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실태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 and Need for the Family Life Welfare Service in Korea\*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학 전공

부 교수 박 미 석

박사과정 전지원·이유리

Major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eeSok Park

Doctoral Course : JeeWon Chun · Yuri Lee

##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Family Welfare Service in Korea.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sists of these main subjects. A analysis about the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the family life welfare services. And a analysis about the Needs of family life welfare servic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407 low-income families experienced of family life welfare servi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y experienced more less 40% of the family life welfare service. It appeared family life welfare service in Korea was still not 'for the family' but 'of the family'. The most of the them experienced of family life welfare service did not satisfy about services. They hoped to get the family life welfare services about housing, elderly-care, child-care, job opportunity.

**주제어(Key Words):** 가정복지(family life welfare), 가족복지(family welfare),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need for family life welfare service)

Corresponding Author: MeeSok Park, Major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gPa-Dong, YongSan-Gu, Seoul, Korea. 140-742 Tel: 82-2-710-9456 Email: msp@sookmyung.ac.kr

\*본 연구는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KRF-2001-005-c00033)

## I. 서론

한국 사회는 서구의 선진국과 달리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특히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개인과 가정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통사회의 다양한 가정의 기능은 점점 더 사회영역으로 이전되어가고 있다. 즉 오늘날 가정은 산업화와 함께 사적 영역으로써 공적 영역과 분리가 심화되는 동시에 사적인 가정생활의 반경이 축소되고 가정외부에 대한 의존도도 강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팽창으로 가정자급적인 지지체제도 약화되었으며, 가족의 생존과 복지는 개별 가족의 역량을 벗어나고 있다. 가정경제적 빈곤, 방치되는 아동, 방황하는 청소년, 증가하는 이혼율, 소외된 노인세대에 이르기까지 가족 및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더 이상 가족만이 부담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점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사회정책 차원의 개입과 검토는 타당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가정생활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기반이 되는 국가와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상응하지 못한 채 과거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부양과 가정생활을 위한 사회정책은 '전가정, 후복지' 이념체제하에서 거의 유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신용하·장경섭, 1996). 지금까지의 한국의 가정복지정책은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한부모,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의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제중심적, 사후치료적 성격의 사회복지차원의 가족복지 즉 협의의 가정복지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왔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조되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증가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방향이 보다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되었다. 사회복지 관련분야에서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에서 일반

국민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 개개인에 대한 대상별 서비스를 가정 및 가족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정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제안하고 있다(김명숙, 1995). 여기에서 현대 산업화 사회가 요구하는 가정복지서비스란 '가족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능을 지지, 보충, 대체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이승미, 2000). 또한 가정복지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요구를 포괄하는(송혜림, 1999) 현대 복지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하고 필수적인 복지서비스이다. 따라서 가정 스스로 복지기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의 기능을 지지, 보충, 대체해 주는 지원시스템으로서의 가정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학문적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중요하다.

가정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 가정학에서는 이를 근거로 가정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들이 90년대 이후 다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은 가정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가정복지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문헌중심의 연구들만이 이루어져 왔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가정복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복지와 구별된 가정복지에 대한 개념규정 및 그 대상의 범위 설정(유영주, 1995; 노영주 외, 1999; 송혜림, 1999),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임정민 외, 1997), 가정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자로서, 가정복지의 이념을 실현하는 실천자로서 가정복지사의 역할(임정민, 1997; 정민자, 1998; 박혜인 외, 1999; 이승미, 1999; 이완정, 1999), 가정복지 및 가정복지정책의 현황과 가정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공인숙, 1999; 최연실, 1999; 이승미, 2000) 등이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복지는 다른 영역에 매몰되어 독립된 분야로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통합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정복지 관련 서비

스에 대한 수혜실태에 대한 조사는 향후 지향하는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미래의 가정복지서비스는 결국 현존하는 정책이나 복지서비스를 바탕으로 출발해야 한다. 또한 그 안에서 개선점과 시사점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가정복지서비스는 어떠한 수준인가를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들을 중심으로 가정복지에 관한 실증적인 수혜실태와 만족도, 요구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정복지정책 및 서비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의 가정복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가정복지의 개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정복지’라는 용어보다 ‘가족복지’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다. 우선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김성천·윤미혜 (2000)는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 데 있어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개입적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가족의 구조·기능적 역할을 보호하고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구성원 및 전체 가족의 복지 및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라 하였다(변화순 외, 2001). 즉, 가족복지는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족이 최대한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게는 적절한 개입과 조절을 통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족복지는 요보호 계층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장애인복지·노인복지·여성복지 등 개인중심의 복지적 접근에 치우치고 있다. 가족복지의 가

족이라는 하나의 전체체계에 접근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개념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서비스의 내용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제시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가족복지서비스는 복지단위로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강조점은 가족의 곤란이나 결함을 원조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가정복지는 가정생활의 문제해결 뿐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정의 기능강화에 초점을 둬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 스스로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이성희·이승미, 1999). 이는 가정복지서비스가 가족구성원의 욕구충족이라는 가정생활의 기능 그리고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체계로서의 가정생활이라는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가정복지를 인적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사회복지의 하위영역으로서의 가족복지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족이 생활해 가는 데 기반이 되는 의·식·주 등 물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적극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정복지는 가정생활상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가정 스스로 생활의 유지·인격의 형성 및 발달·공동문화의 창조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송혜림, 1999)라 정의할 수 있다.

즉, 가족복지가 가족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가족원에게 접근(family problems approach)한다면, 가정복지는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에 접근(family-life issues approach)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노영주 외, 1999). 이와 같이 기존의 가족복지 개념이 자주 개별가족원 중심의 복지로 환원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원뿐 아니라 생활의 주체로서 인간, 다양한 측면의 복합체인 가정생활 및 생활과정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에 적절한 단어는 가족복지가 아닌 ‘가정복지’라 하겠다.

또한 가정복지의 가정생활의 부양기능이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부각된 개념이다. 가정복지의 가정생활상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김으로서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이며, 이로써 가정생활에서의 일상적 삶이 건강하고 주체적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즉, 전문화된 가정복지기능을 통하여 가정생활은 궁극적으로 인간생활에 요구되는 바 복지활동의 주체가 되며, 가족의 자율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더불어 가족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양식의 가능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삶의 범주를 더욱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송혜림, 1999).

이와 같이 이제는 가족복지가 아닌 가정생활을 단위로 하며 주체적인 가정생활의 복지기능을 강조하는 가정복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이나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 시설사업 위주의 서비스 수준이 아닌 개별가정의 가정생활관련 문제의 해결과 치료, 방지와 예방, 지지, 보장 등의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는 가정복지서비스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즉, 가정의 안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여부와 복지대상이 되는 가정이 원하는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2. 한국의 가정복지정책과 가정복지서비스의 범주

가정복지정책은 보건, 문화, 교육, 고용, 주택, 세제 등 다양한 사회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삶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의 안녕과 행복에 기준을 두고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가정복지서비스는 가족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물질적·심리적 욕구와 문제들을 해당 가정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혜란·정경섭, 1995).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가정생활을 복지생산의 주체로 인식(송혜림, 2000)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정복지정책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다. 가정을 사회안정과 사회문제 해결

을 위한 기본단위로 인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가정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적 전제를 살펴보면, 가정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의 최소화함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가 복지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정책 입안이나 행정체계 구축을 할 때도 가정복지는 사회복지의 하위영역으로 취급되거나 가족복지와 혼용하여 독자적인 개념으로서의 가정복지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엄밀히 말해서 독자적 관련법에 의해 제정된 가정복지정책이나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이로 인하여 가정복지정책이나 가정복지서비스라는 용어는 독립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가정복지서비스 전달체제도 독자적인 경로 없이 사회복지 전달체제와 동일한 계통과 흐름 안에서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사회적으로 가정복지는 사회복지 안에서 당연히 구현된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요보호 계층 위주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곧 가정복지의 실현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최연실, 1999).

한편 가정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범주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분류체제에 의거하여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가정복지서비스가 가족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이 가정생활에 대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책을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범주와 내용을 분류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가족원 전체의 가정생활에 대한 욕구에 의거하여 현행 가정복지서비스를 분류하면(표 1) 다음과 같다(변화순 외 2001).

첫째, 소득안정에 대한 욕구는 가족원 전체의 기본적인 가정생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데, 안정된 소득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는 가계비 지원이나 현물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동시에 지속적인 수입원 확보를 위한 고용지원도 포함된다. 둘째, 가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보건과 의료보호가 있다. 셋째, 주거보장에 대한 가정생활 욕구로서 가정생활 거주지 및 생활터전 마련을 위한 주택관련 정책이 있다. 넷째, 가족원의 보호 및 양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아동양육, 노인부양 및 보호가 이에 속한다. 다섯째, 가정

<표 1> 가정생활 욕구에 따른 가정복지의 범주와 내용

가정생활 욕구	가정복지의 범주 및 내용
소득안정	소득보장, 소득공제, 고용안정, 부가급여, 가족(아동수당)
건강 및 보건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주거보장	주거안정 및 주택관련 급여
보호 및 양육	아동양육, 노인부양 및 보호
심리·정서적 안정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
가족가치관 및 인식	가족에 대한 사회적 법제도, 규범 및 인식

자료: 변화순 외(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27, 재구성

생활에 있어서 가족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심리·정서적 지원책을 들 수 있다. 그 예로서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들 수 있다. 끝으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나 법제도 등은 가정복지 관련 정책이 제정되고 실행되는 근거로서, 현존하는 사회구조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족유형이 무엇인가를 가능하게 하여 가정복지정책의 기준 잣대를 제시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고려여부나 개방성, 융통성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작용한다.

### 3. 한국의 가정복지서비스 현황

한국의 가정복지는 대부분 '가족에 의한 복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대상범위에 있어서도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개인으로 한정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요보호 여성 등 문제가 발생할 개인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한국의 가정복지는 국가의 개

입시기 및 내용도 사전 예방적이기보다는 사후 치료적이다(변용찬, 1995; 조홍식 외, 1997). 이와 같이 한정된 대상에게 제공하는 한국의 가정복지서비스 현황을 수혜대상별 분류(표 2)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변화순 외, 2001).

첫째, 전체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 및 생계지원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지원)책이다.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그러나 자활보호대상가구 중 많은 수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자활보호대상가구로 선정되어 있어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게 되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이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단순한 생계지원에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근로능력의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보장, 의료보장, 교

<표 2> 가정복지의 수혜대상별 분류

수혜대상	가정복지의 범주 및 내용
가족을 단위로 한 정책	사회보장(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 주택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공제제도, 가정폭력방지책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보육 및 교육, 입양·위탁·시설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경로연금, 취업알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의료·보건지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자료: 변화순 외(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28

육보장 및 주거보장 등 필요한 기본욕구를 포괄적으로 충족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2000년 10월 현재 생계비 지급대상자는 154만명으로 추산되며 급여수준은 1인 평균 20만 5천원이다. 의료급여대상자는 19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거택보호자에게는 의료비 전액지원,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비의 80%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대상자는 64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는 임대료와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1999). 그러나 1989년부터 시행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정책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비해 건설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그리고 입주 후에도 기초생활보호제도 수급대상자에서 탈락 또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입주 시 2년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들은 퇴거위기에 놓이기도 한다(문화일보, 2003년 3월 28일자).

둘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로 하며 일부는 모자복지법에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이들 내용들이 서로 중복되어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가 별개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일관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아동 관련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시설의 빈약, 낮은 서비스 수준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이나 아동복지 모두 대리적 서비스를 위주로 하여 아동복지 관련 시설보호와 관련해서도 가정이 해체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가족 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있어서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경로연금, 기금, 상담, 입소 등의 조치, 치매관리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복지정책은 성인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즉, 노인의 가정 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노인을 부양하도록 각종 경제적·사회적 유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부모부

양 가정에 대해서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와 같은 세제혜택 및 주택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1998년 약 90%에서 2002년 약 70%로 낮아지고, 가족과 정부사회가 공동으로 노후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은 약 18%를 차지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2). 또한 다른 가정복지와 같이 일반 노인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요보호 대상 및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노인단독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해결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제한, 산전·산후휴가, 생리휴가, 육아휴가 등을 실시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육아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관련 복지서비스에 소모되는 경비부담을 주로 기업이나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사업주들이 여성고용을 회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한 예로서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은 2.3%에 불과하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시행률이 낮다(박숙자, 2000). 또한 사회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가족유형과 기능,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가정복지에서 여성은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노인부양의 책임자로서 위치하여 여성에 의해 가족구성원의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박미석 외, 2003).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가정복지서비스는 제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양적·질적 수준에서 모두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그에 비하여 가족구조와 기능,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가정복지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 및 시행은 매우 절박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복지'의 이념 하에서 사회복지수요의 충족이 원칙

적으로 개별 가족이나 개인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에 의한 복지'의 차원에 속해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가정복지정책 및 관련 서비스가 '가족에 의한 복지'의 차원에 속하여 현재 가족의 자체적 부양, 보호능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가정복지적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하여 정부나 민간 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가족을 위한' 복지로의 방향 전환을 꾀하는 움직임이 점차 일어나고 있다(김혜란·장경섭, 1995).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서울시 기혼여성들의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서울시 기혼여성들이 수혜받은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서울시 기혼여성들의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서울시 기혼여성들이 수혜받은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연령·가구주·취업여부·월평균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서울시 기혼여성들이 인식하는 현행 한국의 가정복지정책 및 서비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으로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척도는 가정복지 관련 전공자 4인의 안면타당도를 통해 문항구성 및 내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표 3)과 자녀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표 4), 취업여부와 관련한 생활실태(표 5), 가정생활상의 어려운 점(표 6),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행동 등(표 7)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가정생활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가정복지서비스 관련 문항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가정복지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며, 잔여적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가정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변화순 외, 2001), 이를 토대로 하여 가정복지서비스 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욕구에 따른 가정복지정책의 범주 및 내용, 수혜대상별 제공되는 가정복지서비스를 토대로 총 24개의 항목을 구성하여(표 8), 이에 대한 수혜여부를 조사하고 서비스 수혜경험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만족도를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 24개 항목에 대해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본인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였다(표 9, 표 10). 한편 현행 한국의 가정복지정책 및 관련서비스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총 18개로, 가정의 기능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표 11).

#### 3.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경험한 복지서비스 수혜여부 및 만족도, 요구도,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따라서 실태조사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본추출하였다. 첫째, 서울특별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에 방문하여 그 곳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을 무작위 추출하여 면접조사를 하였다. 둘째, 서울특별시를 구(區)로 층화한 후 생활수준을 비교하여 7개구(강동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를 선정하고 다시 각 구별로 4개동을 선정하여, 총 28개동 해당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부터 국

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sup>1)</sup> 가정의 기혼여성을 소개받아 면접조사하였다. 셋째, 서울특별시 소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를 방문하여 기혼여성을 면접조사하였다.

조사일정은 2002년 12월 10일~12월 2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여 2003년 1월 17일~2003년 3월 1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설문조사는 훈련된 조사원 총 10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분석자료는 회수된 설문지 430부 중 최종 407부이며,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일원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등을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사항 및 생활실태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표 3>과 같다. 거주지역은 서울시의 25개 구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하여 보면 각각 약 29%, 71%이다. 연령은 20~30대가 약 39%, 40~50대가 약 49%, 60대 이상이 약 12%로 평균 연령은 44.2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대, 40대 각각 약 31%로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다. 조사대상자의 38%가 중학교 졸업 이하로 교육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도 약 2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약 65%이며, 취업을 했더라도(35.1%) 서비스·판매직, 기능·숙련직 등 임금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소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월평균 소득은 조사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매우 낮다. 조사대상자의 전체 월평균 소득은 135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의 가정이 약 41%,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약 22%, 200만원 이상이 약 35%이었다.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약 32%이며, 여성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약 37%로 나타났다. 남편(56.3%) 또는 기타 자녀, 손자녀나 그 외 가족원(약 7%)이 가구주인 경우는 약 63% 이었다. 가구원수는 평균 3.19명으로, 3~4명이 약 62%로 가장 많았으며, 혼자 생활하는 단독가구는 약 7%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약 75% 이었고, 대부분(86%)이 1~2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자가소유인 경우는 20%로 낮은 편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80%가 임대아파트, 전세, 월세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62%가 보통 이상이었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일하기 불편할 정도인 경우가 약 38%이며,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37%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약 44%로 가장 많았다.

###### 2) 조사대상자의 생활실태

다음의 <표 4>는 조사대상자의 자녀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이다.

조사대상자 중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을 이

- 1)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지칭한다(보건복지부 시행령 제36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월)	35만원	57만원	79만원	99만원	113만원	127만원
차상위소득기준	42만원	68만원	95만원	119만원	136만원	152만원

다만, 최대 재산금액(소득인정액제도 도입시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그 환산액이 차상위소득기준에 들어올 수 있는 재산의 최대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내년도 소득환산제하에서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차상위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조사의 실익이 없으므로, 부채를 제외한 재산가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보건복지부, 2002).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재산금액	4,300만원	4,900만원	5,600만원	6,200만원	6,600만원	6,900만원



<표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07)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거주지역	강남	119	29.1
	강북	288	70.9
연령	20~30대	156	38.7
	40~50대	197	48.9
	60대 이상	50	12.4
교육수준	초졸 이하	79	19.8
	중졸	152	38.0
	고졸	142	35.5
	대졸이상	106	26.5
취업여부	전업주부	252	64.9
	취업주부	136	35.1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68	41.3
	100만원~200만원 미만	87	22.3
	200만원 이상	136	34.8
배우자 유무	있음	274	68.3
	없음	127	31.7
가구주	여성 본인	149	36.6
	그외 가족	258	63.4
가구원수	1명	28	6.9
	2명	87	21.4
	3~4명	253	62.1
	5~7명	30	9.6
자녀유무	있음	307	75.4
	없음	100	24.6
주거형태	자가 소유	81	20.0
	전세	102	25.2
	월세	46	11.4
	친척집	5	1.2
	임대아파트	161	39.8
	복지시설	6	1.5
	기타	4	1.0
건강상태	매우 건강함	40	9.9
	건강함	111	27.4
	보통	99	24.4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120	29.6
	병이 잦아 일하기 불편함	35	8.6
종교	기독교	177	43.9
	천주교	43	10.7
	불교	68	16.9
	무교	108	26.8
	기타	7	1.7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표 4> 자녀보육시설만족도 (5점 만점)

		평균	표준편차
자녀 보육시설 만족도	교육비	2.83	1.16
	교육시간	3.09	1.04
	교육시설	2.95	1.14
	교육기관 위치	3.14	1.17
	교사의 질	3.25	1.00
전체		3.08	.86

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 한 결과 전체 평균 3.08점으로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비, 교육시간, 교육시설, 교육기관 위치, 교사의 질 등의 5개 항목 중 교육비에 대해서는 평균 2.83점으로 제일 만족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의 시설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평균 2.95점으로 보통이하로 만족정도가 낮았다. 교육시간, 위치, 질에 대해서는 각각 평균 3.09점, 3.14 점, 3.25점 등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한편 취업여부와 관련한 생활실태는 다음의 <표 5>에 제시하였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약 72%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취업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나, 현재는 집안살림(29.5%) 또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27.5%)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을 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은 '집안살림이 빠듯하다'라는 응답이 과반수(55.0%)로 나타나 이와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취업한 경우에 있어서 취업이유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가 약 66%, '가계소득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약 16%로 역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3시간이었으며, 약 52%만이 근무시간 규정이 있는 전일제 근무이고 약 48%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무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상의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77.5%)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46.9%), 직업의 불안정(39.4%), 본인의 건강(37.1%), 가족의 건강(36.1%)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표 5〉 취업여부와 관련한 생활실태

(N=407)

문항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전업주부 (N=252)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N=244)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72	29.5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2	8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67	27.5	
		건강이 좋지 않아서	65	26.6	
		가족이 반대해서	1	4	
		기타	37	15.2	
전업주부 (N=252)	취업을 하지 않아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N=240)	집안살림이 빠듯하다	132	55.0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	40	16.7	
		생활이 무료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다	34	14.2	
		마치 노는 것으로 취급되어서 불만이다.	14	5.8	
		어려움이 없다	12	5.0	
		기타	8	3.3	
취업의사 (N=250)	취업의사 (N=250)	유	181	72.4	
		무	69	27.6	
취업주부 (N=136)	근무시간 (N=87)	30시간 미만	11	12.6	
		31시간~40시간	30	34.5	
		41시간~50시간	26	29.9	
		50시간 이상	20	23.0	
	고용형태 (N=132)	전일제	69	52.3	
		시간제(파트타임, 아르바이트)	34	25.8	
		3교대 근무	3	2.3	
		격일제(주·야) 근무	3	2.3	
		프리랜서	10	7.6	
			기타	13	9.8
	취업이유 (N=134)	취업이유 (N=134)	생계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89	66.4
			가계소득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22	16.4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좋아서			11	8.2	
집에만 얽매는 것이 싫어서			2	1.5	
사회적 지위와 자아실현을 위하여			9	6.7	
시간이 아까워서			1	.7	
		기타	0	0.0	

주: 근무시간의 경우 정규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함.

※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조사대상자의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은 〈표 7〉과 같다.

결과적으로 한국 가정의 부부관계 및 역할은 여전히 가정경영의 주체로서의 동반자적 부부관계로 발전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나는 가사노동의 전담자이다'와 '남편은 시장보기, 식사준비 등 가사일에 참여한다'에 대해서 각각 평균 4.08

점, 2.31점으로 대체로 부부 가사분담은 매우 낮으며, 여성이 가사노동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에 있어서는 여성이 전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3.90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사 등의 가정의례는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지며(3.87점), 친정보다는 시댁행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3.56점),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공동체로서 여성의 희생이 전체

〈표 6〉 가정생활상의 어려운 점 (N=407)

문 항		빈 도(명)	백분율(%)
가정 생활상의 어려운 점	경제적 어려움	313	77.5
	자녀양육 및 교육	191	46.9
	직업의 불안정	159	39.4
	본인의 건강	151	37.1
	가족의 건강	147	36.1
	가사일	87	21.6
	직장업무	28	6.9
	주위 사람들과 멀어짐	27	6.6
	가정불화	18	4.5
	자녀비행	5	1.2
	기타	24	5.9

로 되는 사회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는 문항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점수(2.28점)를 나타내, 이상의 결과에서 여성은 가족 내에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전담자로서 또한 노인부양의 책임자로서의 과중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조차도 그러한 역할수행에 따른 경제적 대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느 가족구성원보다 희생이 당연시되고 있는 여성들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산정의 시급함과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 2.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여부 및 만족도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여부 및 만족도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우선,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여부에서는 가정복지서비스 중 공공임대주택 분양(47.7%)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직업훈련교육(39.8%), 정보화 교육(37.4%),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35.2%), 기술·기능교육(33.2%)의 순이었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주택, 취업 등 생활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인 고용, 주거와 관련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교육 경험이 많은 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주부 100만 인터넷 교육' (정보통신부, 1999) 운동의 성과로 보인다.

한편 수혜 받은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36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자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2.11점), 무료양로원·요양시설(2.14점), 출산비 지원(2.28점), 노인전문병원(2.29점), 가사지원(2.35점), 가계비 지원(2.37점), 유료양로원·요양시설(2.40점) 순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현금지원수준이 매우 낮아 이와 관련한 창업자금 지원, 출산비 지원, 가계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전문병원, 무료양로원·요양시설, 유료양로원·요양시설에 대한 만족

〈표 7〉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행동

(N=407, 5점 만점)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우리 가정의 주 부양자는 남편이다	3.09	1.49
우리 가정은 제사를 아들이 모시는 등 가족의례가 남성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87	1.17
나는 가사노동의 전담자이다	4.08	1.04
나는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	2.28	1.31
가정 내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때 남편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	3.08	1.13
남편은 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나의 욕구를 존중한다	3.14	1.16
남편은 시장보기, 식사준비 등 가사일에 참여한다	2.31	1.19
자녀양육의 주책임자는 여성인 나이다	3.90	1.09
노부모를 보살피는 주책임자는 여성인 나이다	3.30	1.16
나는 친정보다 시댁행사에 더 열심히 참여한다	3.56	1.18
남편은 나의 친정보다 자신의 본가에 더 관심이 많다	3.56	1.16

<표 8> 가정복지서비스의 수혜여부 및 만족도

(N=407)

문항	가정복지서비스의 수혜여부 (단위: 명(%))		가정복지서비스 수혜만족도 (5점 만점)	
	없다	있다	평균	표준편차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263(64.8)	143(35.2)	2.50	1.09
직업훈련교육	245(60.2)	162(39.8)	3.16	1.05
자활 생산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06(75.6)	99(24.4)	2.81	1.13
창업자금 지원	331(81.9)	73(18.1)	2.11	1.23
공공임대주택 분양	212(52.3)	193(47.7)	3.04	1.31
정보화 교육	253(62.6)	151(37.4)	3.09	1.02
기술·기능교육	270(66.8)	134(33.2)	3.13	1.00
여가·취미교육	290(71.6)	115(28.4)	2.80	1.08
가계비 지원	273(67.4)	132(32.6)	2.37	1.17
출산비 지원	344(84.9)	61(15.1)	2.28	1.20
자녀양육비 지원	285(70.4)	120(29.6)	2.72	1.20
아동보육서비스	312(77.0)	93(23.0)	2.90	1.08
방과후 아동지도, 공부방	331(82.1)	72(17.9)	2.75	1.06
가사지원	354(87.4)	51(12.6)	2.35	1.04
간병지원 또는 방문 간호	345(85.4)	59(14.6)	2.46	1.13
생활상담	337(83.6)	66(16.4)	2.50	1.11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348(85.9)	57(14.1)	2.44	1.24
인간관계, 부모역할훈련 등 집단활동	341(84.4)	63(15.6)	2.57	1.13
주거시설보호	346(85.4)	59(14.6)	2.53	1.10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	349(86.4)	55(13.6)	2.45	1.09
노인전문병원	353(87.2)	52(12.8)	2.29	1.13
무료양로원·요양시설	356(87.9)	49(12.1)	2.14	1.04
유료양로원·요양시설	355(87.7)	50(12.3)	2.40	.99
노인대학, 노인학교	353(87.2)	52(12.8)	2.52	1.39
가정복지서비스 수혜경험 순위	1순위 : 공공임대주택 분양 2순위 : 직업훈련교육 3순위 : 정보화 교육 4순위 :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5순위 : 기술·기능교육		전체 - 평균 : 2.36 - 표준편차 : .81	

도가 낮은 점은 최근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국가사회적 차원의 노인관련시설의 양적, 질적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3.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9>와 같다.

전체적으로 평균 3.90점으로 복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주택과 관련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서비스에 대해서는 4.37점으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무료양로원·요양시설(4.32점), 노인전문병원(4.26점),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4.22점), 직업훈련교육(4.17점), 자녀양육비 지원(4.14점), 정보화교육(4.11점), 기술·기능교육(4.09점), 가계비지원(4.07점), 자녀 방과후 지도 및 공부방(4.03점), 노인대학·학교(4.03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생활 욕구에 따른 가정복지의 범주에 근거하면 주거보장, 보호 및 양

〈표 9〉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  
(N=407, 5점 만점)

문항	평균	표준편차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4.22	.87
직업훈련교육	4.17	.93
자활 생산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3.86	.97
창업자금 지원	3.98	1.02
공공임대주택 분양	4.37	.95
정보화 교육	4.11	.93
기술·기능교육	4.09	.91
여가·취미교육	3.86	.99
가계비 지원	4.07	.97
출산비 지원	3.45	1.34
자녀양육비 지원	4.14	1.10
아동보육서비스	3.98	1.26
방과후 아동지도, 공부방	4.03	1.19
가사지원	3.40	1.13
간병지원 또는 방문 간호	3.56	1.20
생활상담	3.76	1.08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3.47	1.27
인간관계, 부모역할훈련 등 집단활동	3.69	1.08
주거시설보호	3.59	1.21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	3.68	1.21
노인전문병원	4.26	.92
무료양로원·요양시설	4.32	.92
유료양로원·요양시설	3.80	1.10
노인대학, 노인학교	4.03	1.01
전체	3.90	.64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복지서비스	1순위: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83명(20.5%) 2순위: 공공임대주택 분양 63명(15.6%)	

육, 소득안정 관련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또한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순위를 기재하도록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1순위에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83명), 공공임대주택 분양(63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 및 양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가정을 사적영역으로 평가하는 '가족에 의한 복지'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노인과 관련된 요양시설 및 전문병원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결과는 통계청(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더 이상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비율(18.2%)로 점차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소득안정 관련 서비스 요구도에서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현금지원에 대한 요구도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련된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및 직업훈련교육 등의 각종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점은 가정자립차원에서 고무적인 결과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대한 수혜수준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볼 때, 최근 폭증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더욱 심각해진 주택난을 실감할 수 있다.

#### 4.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

연령, 가구주, 취업여부, 월평균소득 등의 배경변인에 따라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에서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20~30대의 여성들보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높다. 또한 20~30대, 40~50대 이하의 여성들보다 가계비 지원, 노인전문병원, 무료양로원·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도 높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생활주기별 발달과제 측면에서 노년기 가정은 은퇴이후 생계비, 자녀 독립 후의 주택 및 주거에 대한 검토, 건강유지와 점검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이에 대한 가정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이승미, 2000)와 일치한다. 반면 20~30대, 40~50대의 여성들은 60대 이상의 여성들보다 자활생산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창업자금지원, 정보화교육, 기술·기능교육, 여가·취미교육, 자녀양육비 지원, 아동보육서비스, 방과 후 아동지도 및 공부방, 생활상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인간관계, 부모역할훈련 등 집단활동, 주거시설보호,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높다. 특히 직업훈련교육, 출산비 지원, 자녀양육비 지원, 아동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 및 공부방,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과 관련한

서비스 요구도는 다른 연령대보다 20~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30대 기혼여성들은 취업, 자녀출산, 아동보육과 관련한 복지서비스 요구도가 높다. 이는 이들이 대부분 가족형성기 또는 미취

학·저학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복지요구도가 높으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가정이기 때문에 맞벌이를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활생산

<표 10> 배경변인별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

변인	구분	N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직업훈련 교육			자활생산공동체 프로그램운영			창업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분양			정보화교육			기술·기능교육			여가·취미교육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연령	20~30대	156	4.29	.65		4.33	.76	A	3.91	.88	A	4.07	.83	A	4.20	1.03	B	4.31	.72	A	4.29	.71	A	4.07	.84	A
	40~50대	197	4.20	.93		4.11	.96	AB	3.94	.98	A	4.07	1.08	A	4.43	.90	AB	4.13	.92	A	4.09	.94	A	3.81	1.03	A
	60대 이상	50	4.11	1.15		3.90	1.23	B	3.33	1.10	B	3.33	1.18	B	4.69	.73	A	3.40	1.21	B	3.48	1.13	B	3.44	1.12	B
	F		.92			4.15*			7.16**			10.08***			5.36**			17.02***			13.72***			7.50**		
가구주	여성 본인	149	4.18	.93		4.14	.92		3.78	1.06		3.91	1.14		4.61	.64		4.07	.92		4.00	.96		3.73	1.01	
	그의 가족	258	4.24	.83		4.19	.94		3.90	.92		4.03	.95		4.22	1.06		4.13	.94		4.14	.88		3.94	.97	
	t		-.58			-.54			-1.21			-1.03			4.44***			-.62			-1.55			-1.87		
취업여부	전업주부	252	4.20	.91		4.18	.98		3.80	1.00		3.90	1.05		4.28	1.01		4.11	.98		4.10	.97		3.93	.99	
	취업주부	136	4.29	.78		4.18	.84		4.00	.92		4.15	.96		4.52	.81		4.15	.83		4.12	.82		3.78	.99	
	t		-.96			.02			-1.77			-2.28*			-2.51*			-.33			-.15			1.41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68	4.18	.94		4.07	1.01		3.89	1.00		3.87	1.16		4.72	.55	A	3.94	1.05	B	3.94	1.00	B	3.56	1.08	AB
	100~200만원 미만	87	4.30	.83		4.21	.89		3.90	.99		4.12	1.00		4.37	.97	B	4.20	.81	A	4.10	.89	AB	4.13	.93	A
	200만원 이상	136	4.24	.80		4.31	.80		3.81	.95		4.02	.86		4.38	1.11	C	4.29	.75	A	4.27	.76	A	4.10	.74	A
	F		.64			2.35			.25			1.78			25.99***			5.62**			4.88**			15.25***		
변인	구분	N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																							
			가계비지원			출산비지원			자녀양육비 지원			아동보육 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 공부방			가사지원			간병지원 또는 방문 간호			생활상담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연령	20~30대	156	3.87	1.01	B	3.86	1.11	A	4.41	.79	A	4.57	.74	A	4.54	.67	A	3.57	.96		3.54	1.10		3.83	.96	A
	40~50대	197	4.10	.97	B	3.27	1.32	B	4.02	1.12	B	3.77	1.30	B	3.91	1.23	B	3.31	1.20		3.60	1.27		3.84	1.10	A
	60대 이상	50	4.52	.68	A	2.90	1.71	B	3.66	1.65	C	2.93	1.47	C	2.88	1.43	C	3.24	1.25		3.51	1.20		3.21	1.25	B
	F		8.50***			12.46***			9.66***			41.05***			41.44***			2.68			.17			6.50**		
가구주	여성 본인	149	4.30	.81		3.30	1.35		4.11	1.16		3.74	1.36		3.90	1.22		3.39	1.11		3.72	1.15		3.71	1.11	
	그의 가족	258	3.93	1.03		3.54	1.33		4.15	1.07		4.12	1.18		4.11	1.17		3.40	1.15		3.46	1.22		3.78	1.06	
	t		3.91***			-1.65			-.34			-2.77**			-1.57			-.07			2.09*			-.54		
직업유무	전업주부	252	4.03	1.04		3.44	1.39		4.09	1.19		3.97	1.30		3.99	1.27		3.33	1.16		3.51	1.22		3.72	1.14	
	취업주부	136	4.17	.85		3.48	1.30		4.22	.96		4.03	1.03		4.11	1.07		3.48	1.11		3.62	1.18		3.84	1.01	
	t		-1.40			-.31			-1.12			-.41			-.93			-1.15			-.86			-1.04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68	4.37	.78	A	3.21	1.49	B	4.17	1.19	3.71	1.39	B		3.81	1.36	B	3.32	1.17		3.64	1.17		3.62	1.16	B
	100~200만원 미만	87	4.05	1.03	B	3.54	1.29	AB	4.16	1.11	4.07	1.29	A		4.18	1.11	A	3.46	1.12		3.54	1.26		3.94	1.04	A
	200만원 이상	136	3.70	1.04	C	3.77	1.10	A	4.12	.98	4.30	.96	A		4.23	.96	A	3.52	1.10		3.53	1.18		3.87	.95	AB
	F		18.33***			6.01**			.08			8.09***			5.10**			1.12			.40			3.03*		

<표 10> 계속

변인	구분	N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인간관계, 부모역할 훈련 등 집단활동			주거시설 보호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			노인전문 병원			무료양로원·요양시설			유료양로원·요양시설			노인대학, 노인학교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M	SD	DMR
연령	20~30대	156	3.63	1.19	A	3.89	1.06	A	3.74	1.12	A	3.99	1.05	A	4.16	.86	B	4.29	.81	B	3.85	1.00		3.93	.95	B
	40~50대	197	3.54	1.29	A	3.77	.94	A	3.62	1.19	A	3.60	1.21	B	4.24	1.00	B	4.27	1.03	B	3.75	1.17	4.04	1.05	AB	
	60대 이상	50	2.78	1.26	B	2.73	1.23	B	3.02	1.33	B	2.98	1.33	C	4.57	.71	A	4.64	.70	A	3.95	1.12	4.26	.99	A	
	F		7.71**			21.09***			6.05**			13.02***			3.62*			3.25*			.80			1.91		
가구주	여성 본인	149	3.44	1.27		3.60	1.00		3.62	1.21		3.63	1.17		4.30	.86		4.33	.92		3.78	1.09		3.99	.99	
	그외 가족	258	3.50	1.27		3.75	1.12		3.57	1.21		3.70	1.23		4.23	.96		4.31	.93		3.83	1.11		4.05	1.01	
	t		-.44			-1.28			.41			-.53			.71			.18			-.37			-.61		
취업여부	전업주부	252	3.37	1.35		3.64	1.15		3.53	1.25		3.59	1.28		4.24	.98		4.37	.89		3.84	1.11		4.09	1.00	
	취업주부	136	3.67	1.14		3.78	.99		3.72	1.14		3.82	1.11		4.31	.81		4.26	.97		3.75	1.10		3.97	.98	
	t		-2.26*			-1.22			-1.45			-1.74			-.71			1.11			.77			1.09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168	3.43	1.27		3.57	1.08		3.62	1.25		3.58	1.25		4.38	.85	A	4.39	.91		3.75	1.14		4.04	1.02	
	100~200만원 미만	87	3.41	1.29		3.78	1.00		3.54	1.14		3.78	1.16		4.30	.84	AB	4.38	.82		4.00	.96		4.15	.90	
	200만원 이상	136	3.64	1.22		3.81	1.09		3.56	1.20		3.80	1.15		4.09	1.04	B	4.21	.98		3.77	1.11		3.94	1.04	
	F		1.20			2.08			.16			1.34			3.41*			1.49			1.54			1.04		

\* p< .05 \*\* p< .01 \*\*\* p< .001 DMR : Duncan's MultipleRanges Test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상담에 대한 서비스는 40~50대가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와 달리 40~50대 기혼여성들은 고용과 관련한 복지서비스 중에서 직업훈련교육보다는 자활 생산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또한 40~50대 기혼여성의 가정은 일반적으로 가족성숙기에 해당하며 가정생활주기상 중년기 부부관계,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로 이와 관련해 생활상담에 대한 서비스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여부에 따른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에서는 여성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공공임대주택 분양(p<.001), 가계비 지원(p<.001), 간병 지원 또는 방문 간호(p<.05)에 대한 복지서비스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보육 서비스(p<.01)는 남편 또는 그 외 가족원이 가구주인 경우가 여성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주부의 경우 전업주부 보다 '창업자금

지원' (p<.05)과 '공공임대주택 분양' (p<.05),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p<.05)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복지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취업여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평균소득에 따른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집단은 100만원 이상의 집단보다 공공임대주택분양, 가계비지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높다. 반면 기술·기능교육, 출산비 지원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는 100만원 미만보다 2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해석을 위해 연령과 월평균소득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히 200만원 이상 집단에 20~30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출산비 지원에서 요구도가 높았던 20~30대가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상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 집단이 출산비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연령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100만원 이상의 집단은 100만원 미만 집단보다 정보화 교육, 여가·취미교육, 아동보육서비스,

방과후, 아동지도, 공부방, 생활상담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만원 미만의 극히 낮은 저소득층의 가정과 달리 100만원 이상의 가정은 가계에 도움이 되는 현물 및 현금 지원의 복지서비스 요구도 보다는 자활적인 교육, 아동보육 관련, 가족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5. 현행 한국의 가정복지정책 및 서비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

현행 한국의 가정복지정책 및 서비스 중에서 향후 가정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설립 확대'가 평균 4.52점(5점 척도)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다양한 아동보육 시설의 확대' (4.45점), '의료보장 및 의료보호 체계 강화' (4.44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화' (4.38점),

'노령수당의 확대' (4.37점), '취업교육 및 상담' (4.35점) 등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향후 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년기 가정의 건강, 경제적 문제와 관련한 복지개선과 확대가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 아동보육 문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동보육과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가정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실용화는 더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복지서비스 수혜정도를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분양, 직업훈련교육, 정보화교육, 기술·기능교육,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가계비 지원, 아동보육서비스 등 주택·고용·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받아 본 경험이

<표 11> 현행 한국의 가정복지정책 및 서비스 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

(N=407, 5점 만점)

분 항	평 균	표준편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화	4.38	.66
자립지원방안 정착	4.24	.68
취업교육 및 상담	4.35	.65
다양한 아동보육 시설의 확대	4.45	.71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4.26	.74
재가복지지원서비스 확대	4.20	.68
의료보장 및 의료보호 체계 강화	4.44	.64
후원회 활성화	3.96	.75
청소년 보호 및 상담시설 확대	4.27	.70
가족상담소 활성화	4.10	.77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가족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4.00	.80
가족유형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	3.87	.82
이혼/재혼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3.90	.82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4.18	.75
청소년 상담시설 확대 및 상담 활성화	4.22	.67
노인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4.27	.72
노령수당의 확대	4.37	.67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설립 확대	4.52	.65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각 영역별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험수준은 4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가정생활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등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에 의한 복지'가 아닌 '가족을 위한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지수혜 대상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가족단위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제고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가정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정복지사가 가정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자로서, 가정복지의 이념을 실현하는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36점(5점 만점)으로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자금 지원(2.11점), 무료양로원·요양시설(2.14점), 출산비 지원(2.28점), 노인전문병원(2.29점), 가사지원(2.35점), 가계비 지원(2.37점), 유료양로원·요양시설(2.40점)에 대한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이와 관련해 복지서비스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가계비나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다 할지라도 그 액수가 적어 실질적인 지원이 별로 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생활상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현금지원수준을 현실수준에 맞게 높이는 등 이들의 가계안정을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의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 주거, 노인, 아동보육, 취업과 관련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특히 가장 시급한 복지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 1989년부터 시행된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따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주거 불안정은 가정생활의 자립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

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해 취업 및 아동보육에 관한 복지서비스 요구도는 향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약 72%가 향후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볼 때, 자활능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교육과 체계적인 취업알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특히 교육비와 교육시설만족도가 매우 낮은 결과를 볼 때 아동보육 서비스에서 특히 비용과 시설 면을 보완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배경변인별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 차이를 살펴보면 특히 60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공공임대주택분양, 가계비지원, 노인전문병원, 무료양로원·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가정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인부양기능의 약화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노인세대에 대한 주거, 경제 및 건강적 지원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노인가정생활과 관련한 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상의 가정은 가계에 도움이 되는 현물 및 현금 지원의 복지서비스 요구도 보다는 자활적인 교육, 아동보육관련, 가족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가정복지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향후 한국의 가정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현재 더욱 개선되어야 할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들은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설립확대,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확대, 의료보장 및 의료보호 체계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화, 취업교육 및 상담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을 향상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노인부양 및 자녀양육 등의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보살핌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이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가정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실용화는 향후 가정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한국의 가정복지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한국의 가정복지는 가족구성원들을 현재의 가족환경에 적응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이들이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환경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개인과 가정 생활환경 사이의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가정복지서비스 요구도를 살펴보면, 특히 저소득층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관련된 취업상담 및 취업안내 및 직업훈련교육 등의 각종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자립차원으로의 가정복지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국가는 미래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 적극적 차원에서 단지 구제의 차원이 아닌 가정이 생활단위로서의 주체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방향으로의 예방적 차원의 가정복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생산적 복지나 참여복지에 대한 주장처럼 향후 한국의 가정복지정책 및 서비스 개발 및 시행에 있어서는 일시적, 부분적으로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족한 부분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진정한 복지는 문제가정 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활동으로 예방적·조정적·치료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유영주, 1995).

최근 학계와 정부 관계부처는 가족단위의 가정생활을 포함한 종합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가족구성원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의 육성에 필요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가족 중심의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기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사회가 발전할수록 가족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가 필수적이므로, 정책입안자와 가정학자들간의 유기적인

관계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뚜렷한 가정복지정책이 존재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가정복지정책은 과연 어떤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방법론으로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요보호가족만이 아닌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생활환경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가정복지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현재 가정복지서비스 수혜경험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과 차상위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 모든 가정에까지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가정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가정복지 대책을 강구해 온 점에 반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전개를 바탕으로 현재의 가정복지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공인숙(1999). 가정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217-228.
- 김명숙(1995). 우리나라 가정복지사업의 실태와 과제,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대한가정학회 제 4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20.
- 김성천, 윤미혜(2000). 가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미간행.
- 김혜란, 장경섭(1995). 가족복지서비스 기능강화(Ⅲ),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단기정책연구(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영주, 허정원, 서지원, 서선희(1999). 가정복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재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73-184.

- 박미석, 송인자, 한정원(2003). 한국가족복지정책에서의 여성정책성. *대한가정학회지*, 41(2), 155-170.
- 변용찬(1995). 가족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II)] 국민복지기획단 전문가 보고.
- 변화순, 송다영, 김영란(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보건복지부(1999). '99년도 가정복지 시책방향.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자료.
- 송혜림(1999). 가정복지의 개념에 대한 가정학적 관점의 정립, 21세기 가정복지의 지향과 사회적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6차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45.
- \_\_\_\_\_(2000).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과 가정복지의 방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31-41.
- 신용하, 장경섭(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서울: 지식산업사.
- 유영주(1995). '가정학과 가정복지', 지방화시대와 가정복지. *대한가정학회 제 48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성희, 이승미(1999). 가정복지 실천의 장으로서의 사회복지관 효용성 연구: 전주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pp.1-18.
- 이승미(2000).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과 실천방안에 관한 탐색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41-154.
- 임정빈(1997). 가정학 전공자는 가정복지사이다.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_\_\_\_\_, 김양희, 이기영, 홍형욱, 계선자, 이정숙, 김순미(1997).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63-180.
- 조홍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1995). *가족복지학*. 서울: 학지사.
- 최연실(1999). 한국 가정복지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99-118.
- 통계청(1999). *한국의 삶의 지표. 통계청*.
- \_\_\_\_\_(2002). 2002 사회통계조사(가족, 복지, 노동부문). 통계청.
- 한국가족복지정책연구소(1997). 21세기의 가족복지와 삶의 질. 제9회 한국가정복지정책세미나.
- 한국보건복지연구원(1998). 보건복지포럼 29. 문화일보, 2003년 3월 28일자.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Anderson, E. A & Hula, R. C. (1991). *The Reconstruction on Family Policy*. New York : Greenwood Press.
- Moes, P. & A. Schorr (1987). "Families and Social Policy", Sussman, M. & Steinmetz, S. 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 Zimmerman, S. (1988). *Understanding Family Policy*. London: Sage Publications.
- (2003년 7월 31일 접수, 2003년 9월 24일 채택)